

의안번호	2205394
의 퇴 인	김용민의원
회 답 일	2024.11.25.
추 계 번호	24D5013

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국민투표 시 재외국민투표와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경우, 2025년에 국민투표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추가재정소요는 891억 2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
재외국민투표 실시(안 제2조)	16,916	-	-	-	-	16,916
사전투표 실시(안 제51조의2)	72,186	-	-	-	-	72,186
합계	89,102	-	-	-	-	89,102

주: 1. 재외국민투표 실시(안 제2조)와 사전투표 실시(안 제51조의2)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 2. 본 추계는 2025년에 국민투표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투표인의 정의)	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	의무규정
2	안 제51조의2(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) 신설	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 구역의 읍·면·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제91조의2(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) 신설	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민투표를 공고한 날 후 10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조(투표인의 정의)	O	—
2	안 제51조의2(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) 신설	O	—
3	제91조의2(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) 신설	X	재외투표관리위원회 구성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기존 인력 활용 여부,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1987년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이후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았고 향후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우나, 추계에서는 2025년에 국민투표가 1회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함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⁾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민투표 시 재외국민투표와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
- 재외국민투표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69억 1,600만원으로 예상
 - 개정안 제91조의3에서는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「공직선거법」을 준용하도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4.10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2.5%	2.1%	2.0%	2.0%	2.0%	2.0%

록 규정²⁾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재외국민투표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제20대 대선의 재외선거 비용을 참고하여 산출함

- 2022년 제20대 대선의 재외선거 예산 178억 6,000만원(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) 중 재외투표장비(구매비용 23억 8,000만원)는 향후 선거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제외하면, 154억 8,000만원(=178억 6,000만원-23억 8,000만원)이 산출됨
- 산출된 금액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25년 기준 168억 1,600만원으로 예상

□ 사전투표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721억 8,600만원으로 예상

- 개정안 제51조의2제2항에서는 사전투표에 관하여 「공직선거법」을 준용하도록 규정³⁾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사전투표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제20대 대선의 사전투표 관련 비용을 참고하여 산출함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선의 사전투표 관련 예산은 664억 5,000만원이고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25년 기준 721억 8,600만원으로 예상됨

□ 추계결과, 2025년에 국민투표를 1회 실시한다는 가정 하에 재외국민투표와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891억 200만원으로 추계

[표 2] 2025년 국민투표 가정 시 추가 재정소요 추정

구분	2025
재외국민투표 실시	16,916
사전투표 실시	72,186
합계	89,10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2) 안 제91조의3(재외국민투표에 관한 「공직선거법」의 준용)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「공직선거법」 제14장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재외선거관리위원회”는 “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”로, “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”는 “국민투표”로, “재외선거”는 “재외국민투표”로, “재외선거인”은 “재외투표인”으로, “재외선거인명부”는 “재외투표인명부”로, “국외선거운동”은 “재외국민투표에 관한 운동”으로 본다.

3) 안 제51조의2(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) ②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「공직선거법」의 사전투표소 및 사전투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2025년에 국민투표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